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 : 강성삼 의원

발의일 : 2022. 2.

1. 제안이유

○ 「지방행정동우회법」에 따라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,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하남시행정동우회의 육성 및 지원 목적을 정함(안 제1조)
- 나. 동우회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회원의 구분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동우회에서 수행할 사업과 사업 수행에 필요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소병찬)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지방행정동우회법」의 시행('20.3.31)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, 동우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과 공익 봉사활동 등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견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
- 검토 결과,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,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